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(서울혁신파크 1단계 조성공사(장기계속)(1차)-도기본)

- 점검일시 : 2017.12.05 (화)
- 점검결과
- ◆ 점검자 : 윤원섭,기성호

○ 추락재해 예방(건축부)

- 천정작업, 전기배선 작업을 위한 이동식비계는 작업중 움직임이 없도록 바퀴 고정 또는 아웃리거가 지면에 견고하게 밀착요함
 ※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07(이동식비계),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68조(이동식비계)



○ 감전재해 예방(건축부)

- 10동 2층 미장작업을 위한 가설전선은 조명용 일명 오징어 등은 접촉시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용 전선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 요함
 ※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17(가설전선),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01조(전기기계기구등의 충전부 보호)



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(건축부)

- 작업 중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바, 10동 옥상층 계단실 참부위 낙하물방지를 위한 발끝막이판 또는 수직방망 추가설치 요함
 ※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01(안전난간),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14조(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



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(건축부)

-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내부 작업 중 낙하물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구는 상시 차단되도록 관리요함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01(안전난간), 산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14조(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



○ 감전재해 예방(건축부)

- 분전반으로부터 전원을 인출하여 사용할 경우 전선의 용도 및 사용처를 식별할 수 있도록 테그를 표기 요함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16(분전반)



○ 추락재해 예방(건축부)

- 작업 중 추락의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추락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, 높이가 부족한 9동 4층 발코니 데크 부위에 안전난간 설치 요함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01(안전난간), 산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13조(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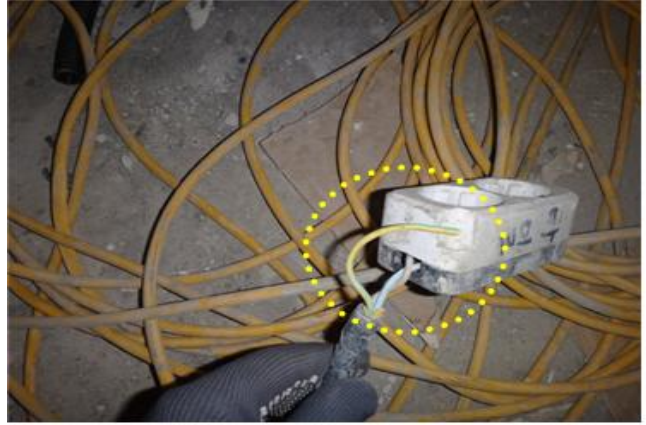
○ 추락재해 예방(건축부)

- 마감작업을 위한 말비계는 발판폭 40센티미터 이상 유지되도록 조치 요함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06(말비계)



○ 감전재해 예방(건축부)

- 가설전선은 접지가 단락되지 아니하도록 콘센트로부터 단락된 접지선 연결요함
※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17(가설전선),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302조(기계기구의 접지)



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(건축부)

- 홈베이스동 누드승강기 피트 측면 상부에 적치된 자재의 낙하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거 요함
※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14조(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



○ 가설통로 안전(건축부)

- 15동 부출입구 드라이 에어리어 부위 통로발판은 처짐이나 움직임이 없도록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고 고정 요함
※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02(작업발판 및 계단),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



○ 건설기계 안전(건축부)

- 15동 전면 자재 야적장 가설자재 반출을 위한 지게차 운전자는 차량용 안전대를 착용하고 운행하도록 조치 요함
※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35(지게차)



○ 건설기계 안전(건축부)

- 15동 유리 코킹작업을 위한 고소작업대(일명 스카이)를 설치할 경사면에 설치할 경우 충분한 사전검토 및 승인 후 작업이 진행되도록 관리요함(아웃트리거 받침목 과다적재, 바퀴 고임목 고정 미흡)
※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37(고소작업대 차량탑재형)



○ 추락재해 예방(건축부)

- 정화조 내부 거푸집 해체 작업 중 밀폐공간 작업절차 준수 및 개구부 고정 및 표지 부착 요함
※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02(작업발판), 042(밀폐공간),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

